

CEO REPORT
2004 - 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 참여전략

2004. 9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경영상의 시사점을 도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요약 >

- 최근 엘니뇨, 라니냐, 오존층 파괴 등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국내외의 자연재해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보험상태*임

* 최근 5년간 세계 자연재해피해중 추정 보험담보율 18.9%

- 자연재해보험시장은 농작물재해보험에 이어 2005년 풍수해보험의 도입이 예상됨
 - 2004년 농작물재해보험의 순보험료는 330억원 수준이나, 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농업보험으로의 발전, 풍수해보험의 도입 등으로 2조 5천억원 이상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이 예상됨
- 자연재해보험시장은 재물보험성격으로 손보사의 사업역량이 충분하고, 향후 제도개선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 저성장기조의 손보업계에는 대안시장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시장참여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연재해보험의 대상 목적물이 손보사 영업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아직은 시장이 소규모인 점을 고려할 때,
 - 단기적으로는 재보험방식에 의한 시장참여를 하면서, 시장성장 및 제도개선 추이 등을 고려하여 원보험방식의 시장참여시기를 탐색하는 접근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판단됨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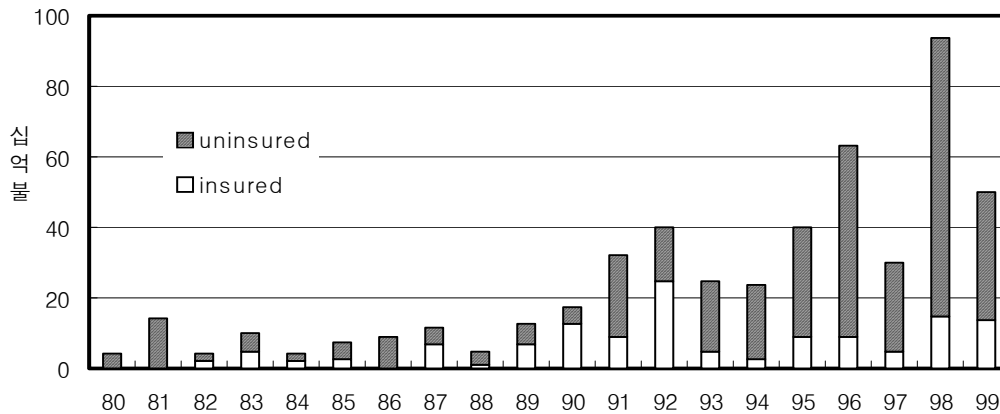
I. 검토배경	1
II. 자연재해보험제도 현황 및 시장전망	2
III. 시장참여 전략수립을 위한 분석	8
IV. 손보사의 시장참여 전략	15
V. 결론	17
< 별첨 1 > 주요국의 자연재해관련 보험제도 현황	
< 별첨 2 > 주요국의 농작물재해보험제도 현황	
< 별첨 3 > 농작물재해보험 작물확대계획에 따른 보험료 규모 추정자료	

I. 검토배경

- 최근 엘니뇨, 라니냐, 오존층 파괴 등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피해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보험상태*에 있음

* 최근 5년간 세계 자연재해피해중 추정 보험담보율 18.9%

<그림 1> 세계 기후관련 자연재해피해와 보험담보 현황



자료) The World Bank, 2000, "Managing Catastrophic Risks Using Alternative Risk Financing & Insurance Pooling Mechanisms", p. 28.

- 우리나라는 대륙·해양성기후로 최근 거의 매년 수조원의 자연재해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이런 자연재해피해에 대비한 다양한 자연재해관련 정책성보험(이하 "자연재해보험" 이라 함)을 시행하고 있거나 개발을 추진 중임

<표 1> 우리나라 자연재해보험 개발현황

보험종목	도입여부	소관부처
농작물재해보험	기도입	농림부
풍수해보험(가칭)	도입 준비중	소방방재청

- 따라서, 저성장기조의 손보업계로서는 시장확대측면에서 자연재해보험시장에의 참여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II. 자연재해보험제도 현황 및 시장전망

1. 보험제도 현황

- 자연재해보험¹⁾이란 정부의 주요정책을 실현할 목적으로 개발된 정책보험으로,
 - 보험료 및 운영경비의 지원, 국가재보험에 의한 책임분담 등의 보험제도를 별도의 법률제정을 통하여 도입하는 특징이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과수작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풍수해보험은 2005년 시범사업실시를 준비 중임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순보험료의 50% 및 운영경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고,
 - 일정손해율을 초과하면 국가가 전액부담하는 방식(Stop Loss Ratio 방식) 등에 의한 국가재보험 도입을 검토 중임

<표 2> 우리나라 자연재해보험 제도 도입 현황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도입 준비중)
근거법률	농작물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가칭)
보험의 목적	사과,배,포도,복숭아,단감,감귤	비닐하우스, 축사
가입방식	임의가입	지자체 일괄가입 또는 주민 임의가입
운영주체	농협/보험회사	검토중
정부지원	순보험료 50%, 사업비 전액	검토중
보상방법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설정	피해규모별 정액보상
위험분산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준비중	국가재보험제도를 전제로 검토중

1) 기도입·운영중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축공제와 도입·검토 중인 양식보험, 중소기업 자연재해보험 등도 광의의 자연재해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논의의 편의상 시장성이 크고 기도입 또는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함

2. 시장전망

가. 시장규모

□ 정부의 확대정책에 의하여 자연재해보험시장은 장기적으로 2조 5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시장으로 발전될 것임

- 농작물재해보험의 순보험료 규모는,
 - 2004년 330억원에서 2013년 2천 1백억원으로 증가하고,
 - 장기적으로 6천 1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풍수해보험의 순보험료 규모는,
 - 2005년 시범사업 실시시점에서는 500억원에 불과할 것이나,
 - 보험대상에 주택을 추가하게 되면 1,200억원으로 성장하고, 장기적으로는 1조 9천억원의 보험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

<표 3> 우리나라 자연재해보험 시장규모 예측

구분	단기	중기	장기
농작물재해보험	330억원	2,100억원	6,100억원
풍수해보험	500억원	1,200억원	1조 9,000억원

- 주) 1. 단기에측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2003년 순보험료이고, 풍수해보험은 비닐 하우스 및 축사의 전국규모 시범사업을 가정한 순보험료 추정치임
2. 중기에측에서 농작물은 품목확대계획안(표5)이 완성되는 2013년 기준이고, 풍수해보험은 주택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될 경우를 가정한 것임
3. 장기에측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보험으로 확대되는 시점, 풍수해보험은 무상복구비 지원대상 전부를 보험대상으로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음

- 외국의 자연재해보험 시장규모
 - 농작물재해보험은 국제적으로 보조금금지 예외로 인정(green box)되는 제도로 미국 농작물보험 규모는 약 4조원에 달함
 - 풍수해보험은 해당국의 자연재해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수조원 또는 수천억원의 보험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표 4> 주요국의 자연재해보험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 ^{주1)}	14,947억원 (1,444억엔)	39,474억원 (34억달러)		-	4,005억원 (2.7억유로)
풍수해보험 ^{주2)}	지진보험 5,282억원 (508억엔)	홍수보험 21,984억원 (19억달러)	지진보험 3,468억원 (3억달러)	풍수해보험 11,521억원 (8.13억유로)	-

주) 1. 일본, 스페인은 2002년, 미국은 2003년 순보험료 기준임

2. 일본 및 미국(지진보험)은 2003년 순보험료 기준이며, 미국(홍수보험)과 프랑스(풍수해보험)는 2001년 영업보험료 기준임

나. 시장확대

□ 자연재해보험은 지속적인 대상목적물의 확대가 예상되며, 보험가입률의 상승, 보상수준의 상향 등에 의한 보험확대가 추가될 경우 급격한 성장이 예상됨

○ 최근 경제장관간담회(2004. 6. 18일)에 보고된 「대상작물 확대 계획(안)」에서는 2013년까지 대상작물을 30개 작물로 확대

<표 5>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물 확대계획(안)

년도	품 목 명			
	보험준비	시범사업 1년차	시범사업 2년차	전국 확대
2004	수도작, 시설작물 (토마토, 딸기, 수박)	-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2005	인삼, 시설작물 (참외, 오이, 호박)	수도작, 시설작물 (토마토, 딸기, 수박)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2006	시설작물(무, 배추, 풋고추, 메론)	인삼, 시설작물 (참외, 오이, 호박)	수도작, 시설작물 (토마토, 딸기, 수박)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2007	고추, 맥류, 난류, 장미	시설작물(무, 배추, 풋고추, 메론)	인삼, 시설작물 (참외, 오이, 호박)	수도작, 시설작물 (토마토, 딸기, 수박)
2008	마늘, 양파, 감자, 느타리	고추, 맥류, 난류, 장미	시설작물(무, 배추, 풋고추, 메론)	인삼, 시설작물 (참외, 오이, 호박)

자료) 경제장관간담회 보도자료(2004년 6월 18일)에 의한 확대계획이며, 연도별 세부확대계획은 농림부 내부자료 내용임(2008년 이후 세부확대계획은 농림부에서도 미확정 상태임)

- 농작물재해보험은 장기적으로 **농업보험으로 확대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농작물(수도작), 가축, 과수, 밭작물, 원예시설 등을 농업공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o 자연재해보험은 일본 농업공제의 대상과 현행 자연재해 무상 복구비지원 대상전체(공공시설물, 농경지 등 포함)를 궁극적인 대상목적물로 하고 있음

- 다만, 정부부처간 소관업무, 관련법률의 제·개정 등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보험제도의 담당 및 형태는 달라질 수 있음

<그림 2> 정부의 무상복구비지원 대상시설물별 소관부처 및 보험제도 전망

대상시설	소관부처	보험제도
일반시설 (주택)	소방방재청	o 풍수해보험(시행준비)* - 축사, 비닐하우스 시범사업 준비중 - 주택, 공공시설물 등으로 확대 가능 ⇕ 연계가능
농업시설 (농경지, 농림시설, 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농림부	o 농작물재해보험(시행) ⇒ 농업보험으로 확대 예상

* 소방방재청에서 법률제정준비 등 구체적으로 제도도입을 준비중에 있음

o 보험가입률은 보험제도의 개선 → 시간경과에 따른 위험의 안정화²⁾ →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또한, 풍수해보험의 경우 정액보상을 가정하고 있으나 실손보상제도로 전환하게 되면, 시장규모는 추정액 대비 5배~6배³⁾ 더 커질 수 있음

2) 자연재해위험은 국가재보험의 도입으로 손보사의 손해를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보험실적이 축적되면 좀 더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임

3) 현행 풍수해보험의 보상수준은 무상복구비의 100%(실제손해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평균 20%~30%))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향후 실손전부보상기준으로의 전환을 가정한 효과임

다. 보험제도 개선

- 자연재해보험의 현행제도는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개선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3> 자연재해보험 제도적 요건 충족 검토

구분	제도적 요건	현행		개선 가능성
		농작물	풍수해	
정부의 역할	<input type="checkbox"/> 보험시장 육성정책 추진 <input type="checkbox"/> 시장의 투명성 제고, 제도적 안정장치 마련, 시장 변화에 대응한 예산의 탄력적 운영 <input type="checkbox"/> 보험료 보조 등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	중	고4)	가능
위험 분산	<input type="checkbox"/>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와의 재보험거래 안정성 확보	저	중	가능
가격 결정	<input type="checkbox"/>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한 가격 결정 <input type="checkbox"/> 농민부담 등 비시장적 이유에 의한 요율인상의 정책적인 개입금지의 정책적인 개입금지 <input type="checkbox"/> 보험요율의 탄력성 제고	중	중	가능
손해 사정	<input type="checkbox"/>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 ○ 손해액 평가의 용이성 ○ 손해평가검증제도, 손해평가인의 객관성 ○ 손해과장행위 방지대책 등	저	중5)	가능
역 선택 방 지	<input type="checkbox"/> 보험가입률 제고 등 위험안정화를 위한 정부 지원 ○ 정부의 적절한 보험료 보조, 장기가입자 우대 등 제도적 유인장치 마련 <input type="checkbox"/> 보험원리를 이용한 대응 ○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 고위험 계약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확대 등	중	고6)	가능

- 4) 풍수해보험은 무상복구비지원제도의 대체제도적 성격이며, 필요자금이 상당부분 확보된 상태이므로 농작물재해보험보다는 유리함
- 5) 풍수해보험은 소파, 반파, 전파로 손해유형을 단순화하여 정액보상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손해평가는 농작물재해보험보다는 유리한 편임
- 6) 풍수해보험은 시군구별 일괄가입방식으로 역선택위험에 대응할 수 있음

□ 우리원은 농림부·기획예산처의 요청으로 2004년 6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Task Force⁷⁾”를 운영 중임

- 검토중인 제도개선중 국가재보험의 도입, 보험원리에 입각한 요율조정 등은 보험자의 사업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
- 미국의 농작물보험 국가재보험은 보험자의 수익성을 확보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보유기준의 순보험영업은 항상 흑자)

<표 6> 미국 농작물보험 원수 및 재보험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별	총 보험료	재보험료	출재율	총 손해액	재보험 회수	손해율		
						원보험	보유	출재
1999	2,312	476	20.6	2,393	1,100	103.5	70.4	231.4
2000	2,536	642	25.3	2,579	1,252	101.7	70.0	194.9
2001	2,978	605	20.3	2,965	1,234	99.6	72.9	204.0
2002	2,909	615	21.1	4,042	1,961	138.9	90.7	318.9
2003	3,434	828	24.1	3,231	1,249	94.1	76.1	150.9
계	14,170	3,166	22.3	15,209	6,796	107.3	76.5	214.7

주) USDA RMA자료

- 기타 T/F에서 검토중인 제도개선 사항은 초과손해 배분기간 단축, 객관적 손해사정, 엄격한 보험상품 운용 및 위험인수 등이 검토되고 있어 사업성은 상당부분 개선될 여지가 있음

7) 해당 정부부처, 학계, 손보업계 및 농협 등이 참여하고 있음

Ⅲ. 시장참여 전략수립을 위한 분석

1. 시장분석

가. 시장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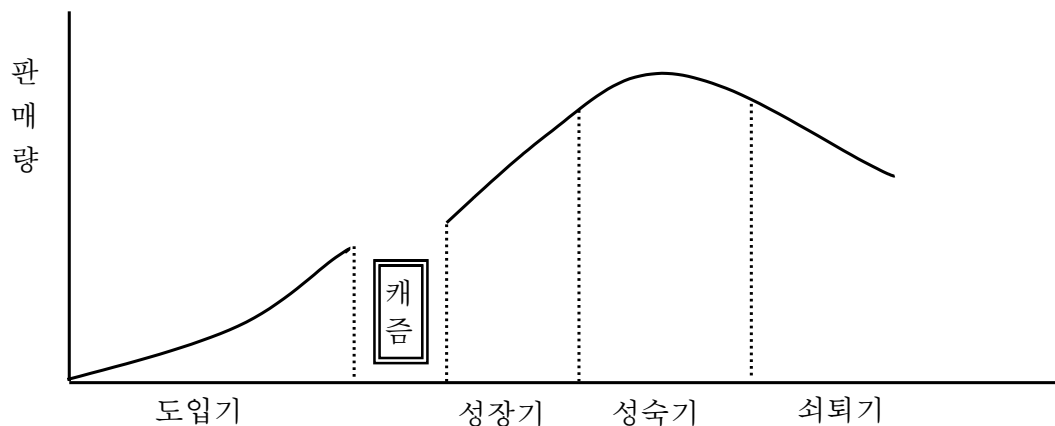
□ 시장진입 및 구조

- 현행 법률 및 제도상 손보사는 원보험 및 재보험방식의 시장 참여를 할 수 있음
 - 손보업계는 2001년과 2002년에는 재보험 방식으로 참여한 바 있으나, 2002년 태풍 '루사'로 큰 손해를 경험하였음
- 현행 자연재해보험의 대상목적물은 주로 농촌에 소재하고 있어,
 - 농촌에서 영업망을 기구축하고 있는 농협만 원보험자로 참여하고 있음

□ 자연재해보험시장의 발전단계

- 현행 자연재해보험시장은 도입기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첨단 제품주기론에서 말하는 캐즘(chasm)단계(자연재해보험제도의 안정화 단계)를 거친 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제품주기에 따른 판매량



□ 자연재해보험 시장형성 제약요인

- 자연재해보험은 역선택 위험(adverse-selection risk)과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을 제어하지 못하면 시장형성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
 - 보험자는 인수업무의 강화, 요율의 적정차별화 등으로 위험이 높은 계약자를 확인하여 대응하고, 보험가입율을 제고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평균적 위험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계약자가 보험가입후 위험관리의 태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부담금제도, 개별실적에 의한 보험료 할인할증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손해평가의 전문성 결여 및 온정적 손해평가 등은 도덕적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음
 - 자연재해보험은 기존의 전통적 손해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손해사정상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민 또는 농민단체 위주의 손해사정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는 상태임
- 적정한 보험료 조정시스템 및 국가재보험의 미비는 손보사의 시장참여에 주요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 정책보험의 성격상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시장의 요구수준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손보사로서는 사업투명성 결여로 시장참여가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정부는 민영보험원리에 입각한 보험료 조정과 국가재보험의 대재해손해에 대한 책임분담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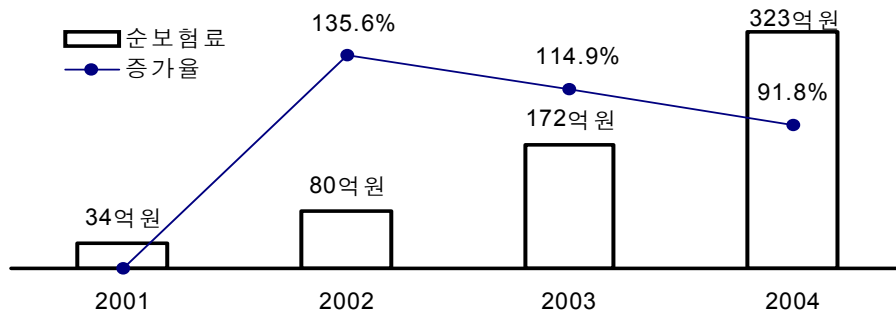
나. 시장평가

□ 실적 분석

○ 성장률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연평균 114.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풍수해보험도 무상복구비지원제도의 대체제도적 성격을 감안할 때 시장확대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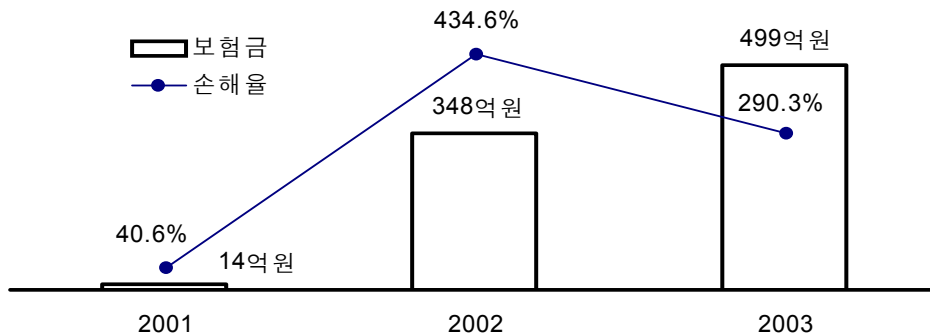
<그림 5>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규모 및 증가율



○ 손해율

- 최근의 연속된 자연재해로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연평균 255.2%의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여 보험영업적자 상태임

<그림 6>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실적



- 풍수해의 경우에도 최근의 대재해로 사상 최고의 피해규모 (2002년 태풍'루사' 피해액 약 6조원)를 기록하고 있음

<표 7> 정부의 자연재해피해에 대한 무상복구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복구비	연도	복구비
1993	300,899,955	1998	2,250,284,687
1994	272,744,287	1999	2,171,642,113
1995	995,441,372	2000	1,530,884,988
1996	787,442,774	2001	1,812,818,872
1997	304,214,947	2002	8,950,352,638
		평균	1,937,672,663

주) 2002년도 가격기준임
 자료)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책본부, 「재해연보, 2002」

□ 시장평가 및 분류

○ 시장평가

-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은 높으나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높은 손해율로 수익성은 낮아 시장매력도는 “중급”으로 평가됨
- 장기적으로는 고성장을 유지하면서 손해율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급” 또는 “상급시장”으로 평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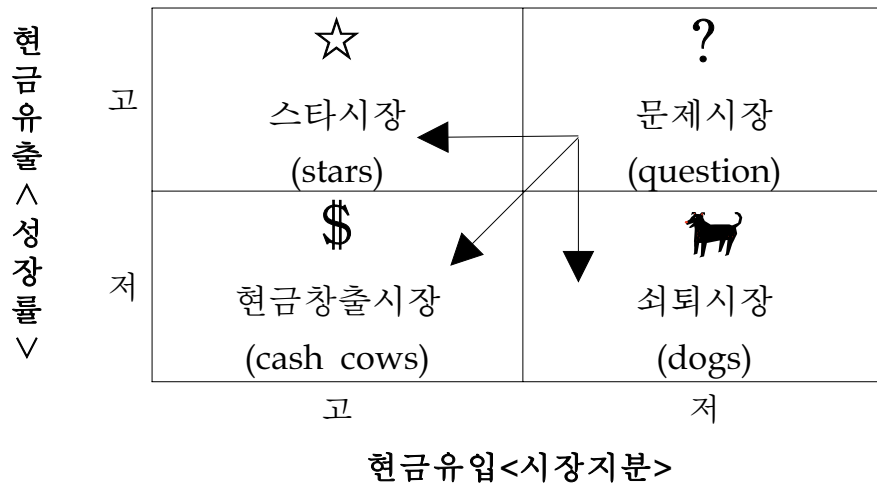
<표 8> 자연재해보험시장의 매력도 평가

구 분	성장성 평가	수익성 평가	종합평가
단 기	상(소규모시장)	하	중
장 기	상(대규모시장)	중	중·상

○ 시장분류

- BCG(Boston Consulting Group)의 「성장률-시장지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자연재해보험시장을 “문제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향후 보험제도개선 등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여 “스타시장” 또는 “현금창출시장”으로 발전하고,
- 실패하는 경우 “쇠퇴시장”이 되어 제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임

<그림 7> BCG의 성장률-시장지분 매트릭스



2. 손보사의 역량 및 강약점 분석

□ 내부역량 분석

- 손보사는 주요 보험업무중 위험인수 및 평가, 위험분산 등에서 경쟁력이 충분한 반면,
 - 농촌지역에 영업점포망이 없을 뿐 아니라 아직 자연재해보험 계약인수 및 손해사정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손보사의 회사규모별 경쟁력은 기존 보험영업상 차이가 그대로 연결될 수 있으나, 투자여력은 대형사가 있다고 판단됨
 - 시장참여에 대한 인식은 2002년 재보험방식의 참여로 큰 손해를 본 경험과 최근의 자연재해 빈발로 소극적인 상태임

<표 9> 손보사의 경쟁력 평가

구 분	인수능력	위험평가	위험분산	인력·시설등
내 용	인수경험 풍부	위험평가 전문 인력 보유	재 보험 능력 우수	농촌지역 점 포망 및 전 문인력 미비
평 가	상	상	-	중

□ 외부요인 분석

- 기회요인으로는 저성장기조가 정착된 일반손해보험에 있어 시장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임
 - 부수적으로 공익적 정책보험의 취급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인식제고 등 대국민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반면, 손보사가 초기시장에 불참할 경우 자연재해보험은 국가 보상제도 또는 공제제도화 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 대재해 발생에 의한 손해가능성, 농민의 이해부족에 의한 민원증가 및 과도한 보상 요구 가능성 등은 위협요인임

<그림 8>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에 대한 SWOT 분석

내부적 강점 보험상품 개발능력 위험평가인수분산능력	외부 기회요인 대규모 신시장의 확보 대국민 홍보효과
내부적 약점 농촌지역 인프라 미비(구축비용 소요)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고위험 인식	외부 위협요인 보험제도화의 좌절(보상 및 공제제도화) 대재해손실 가능성, 민원증가 우려

3. 시장참여 방식

□ 참여방식은 크게 위험인수방식과 서비스제공방식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서비스제공방식은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 즉, 농촌지역에 대한 영업망 구축비용, 별도의 전문인력 확보 등 투자비용은 원보험방식에 준하지만,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없고 보험사업이익의 기회도 없음

8) 실질적인 보험위험인수없이 보험료 징수대행, 손해사정대행 등 보험업무를 대행해 주고 서비스보수(fee)를 받는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대기업의 건강보험사업을 보험회사가 대행하는 사례가 있음

□ 위험인수방식은 원보험방식, 재보험방식 및 보험폴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원보험방식은 손보사가 직접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보험제도를 조기 정착시킴으로서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다만, 농촌지역에 대한 영업망 구축비용, 계약 및 손해사정 전문인력의 확보 등 초기투자비용 소요
- 재보험방식은 별도의 초기투자비용 없이도 가능하나, 경쟁력 발휘와 도덕적 위험 등의 통제는 원보험자를 통한 간접통제만 가능함
 - 원보험자와의 재보험계약 및 국내외 재보험자와의 재재보험 계약을 통한 제한적 보험영업기회만 기대할 수 있음
- 보험폴의 구성은 일반적인 고위험물건의 인수에 유용한 면이 있음에도 원보험방식 또는 재보험방식에 비하여 업무성과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 Blind Underwriting의 위험, 비경쟁적 시장구조의 정착 등 부정적 요소로 우리나라 자연재해보험에는 부적합⁹⁾

<표 10>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참여방식별 장단점

참여방식		장단점				
		초기투자비용	경쟁력 발휘	도덕적위험 통제	역선택위험 통제	사업이익 기회
위험 인수	원보험참여	소요	○	○	○	○
	재보험참여	불요	△	△	△	△
	보험폴 참여	소요	△	△	△	△
서비스 제공		소요	△	×	×	×

9) 외국의 사례(스위스)를 고려할 때 임의적 보험가입이 아닌 경우에는 역선택위험이 적어 보험폴도 가능할 것임

IV. 손보사의 시장참여 전략

-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시장매력도(표8 참조)와 손보사의 경쟁력(표9 참조)을 고려할 때, 전력투구, 우월성 유지, 선택적 성장 및 선택적 확장 등의 전략이 가능
 - 선택가능한 전략 중 전력투구, 선택적 성장, 우월성 유지전략은 “스타(stars)시장”(그림7 참조)에 적합한 전략임
 - 스타시장에서는 시장지분확대를 통하여 기업의 이익극대화 전략을 달성할 수 있음
 - 따라서, “문제(question)시장”인 자연재해보험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단기전략으로는 “선택적 확장전략”이 적합

<그림 9>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 시장참여 전략

시장 매력도	상	전력투구	선택적 성장	-
	중	우월성 유지	선택적 확장	-
	하	-	-	-
		상	중	하
		회사의 경쟁력		

□ 선택적 확장전략

- 손보사들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투자비용없이 사업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재보험방식의 참여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의 높은 손해율, 원보험방식의 투자비용, 국가재보험 등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재보험방식이 현실적임

- 손보사가 재보험방식의 시장참여를 결정할 때에는 제도 및 시장측면의 사업성 확보조건에 대한 확인·분석이 필요

<표 11> 재보험 참여방식의 사업성 확보조건

제도측면	시장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보험 도입 - 보험수리에 의한 요율결정 - 손해사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재보험모델의 구축 - 충분한 보험요율의 인상 - 장기적 고성장 예측 등

□ 전력투구, 선택적 성장 및 우월성 유지전략

- 전력투구, 선택적 성장 및 우월성 유지전략은 손보사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전략으로,

- 전력투구전략은 자연재해보험시장을 “스타시장”으로 인식하고, 시장지분확대를 통하여 이익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경영판단을 내리는 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음
- 선택적 확장전략에 의한 이익을 재투자하면서 경쟁력 강화와 시장이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개별회사의 원보험방식 시장참여는 개별회사의 경쟁력 및 시장참여 준비상황 등과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회사별로는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나,

- 보유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제도개선 및 시장 안정화를 주도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여건과 시장성(시장성장, 손해율 안정)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가능할 것임

□ 손보사는 재보험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시장성장, 손해율 안정 및 제도개선 추이 등을 고려하여 원보험방식의 시장참여 시기를 탐색하는 접근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판단됨

V. 결 론

- 자연재해보험은 자연재해라는 국가적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으로 위험관리측면에서는 국가 및 사회적 능력에 대한 척도로 보는 견해¹⁰⁾가 있음
 - 자연재해는 막대한 피해를 수반하는 위험으로 국가적 해결 과제이며,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자연재해보험이 가장 합리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음
 - 자연재해보험은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위험관리주체인 일반국민, 정책주체인 정부 및 보험업계의 공동 노력과 긴밀한 협력에 의하여 성공할 수 있는 제도임
- 따라서, 국민 불안의 해소, 국가위험의 해결, 보험시장의 확대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자연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참여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손해보험업계의 저성장 기조와 고유분야인 일반손해보험의 시장점유율(FY2003년 : 13.3%)를 고려할 때, 신시장의 개척·확대가 절실하고,
 - 초기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자연재해위험시장의 보상제도화 또는 공제제도화가 고착될 우려가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시장참여방안 및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연재해위험의 평가모델 개발, 날씨파생상품 도입방안, 화재보험의 풍수재담보 효율화 방안 등도 업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현안이라 판단됨

10) 세계적인 미래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보험과 손실통제를 통한 위험관리능력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고 말한 바 있고, 최근 Swiss Re.의 자연재해관련 보고서(Swiss Re’s Focus Report, Flood is Insurable!, 2002)에서는 국민, 민영보험자와 정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한 바 있음

<별첨 1> 주요국의 자연재해관련 보험제도 현황

구분	미국(홍수)	미국(지진)
운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제(NFIP)(1968년) - 인가대리점 및 민간보험사에 의한 보험계약체결 및 손해사정 (WYO, 모든 증권의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 통제(CEA)(1966년) - CEA에 의한 지진보험제도 운영 - 지진전문보험회사에 의한 담보 제공 - FAIR PLAN 운영
관련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8 국가홍수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 캘리포니아보험법 (sec.10089.5~sec.10089.54)
담보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손해 임의담보 - SFHA 저당권자에 대한 의무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손해 임의담보
상품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홍수보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종합보험의 특약으로 운영
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서 결정 - 보험회사는 수수료를 받음 - 단독주택 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1%~0.525%의 지역별 요율산출 - 0.015%~0.38%의 FAIR PLAN 추가담보요율
보상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건물 25만불 - 상업 건물 50만불 (재설치 및 건물변경비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25,000불 - 동산 5,000불(증액가능) - 손해사정비용담보
공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물건 500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선택 가능 - FAIR PLAN 손해액의 15%
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보험은 없고 정부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A를 통한 정부의 재보험담보 제공 (총보상한도액 기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선택위험이 높아 높은 보험요율 수준 유지 - 보험요율산정시 지역별 위험도평가 (hazard zonation)에 의한 구분 - 연방정부가 무한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종합보험에 부대하는 의무담보로 역선택위험 감소 - 정부가 CEA를 통한 재보험담보 제공

구분	프랑스	스위스	일본(지진)
운영 형태	- CatNat프로그램운영 - 국가규제 - 보험회사 원보험인수 및 CCR에 재보험(무한보증)	- 국영보험 및 민영보험 공존 - 민영보험 Pool은 9개 주를 대상으로 운영 - 2/3의 건물이 국영보험에 가입	- 국가통제(1966년) - 가계성지진보험제도 - 보험회사가 인수하여 JER에 재보험, JER이 다시 손보사 및 정부에 재재보험
관련 법률	- 자연재해손실보상에 관한 법(1982년)	- 자연재해법(1990년)	- 지진보험에관한법률 - 지진재보험특별회계법
담보 위험	- 대부분의 자연재해위험	- 대부분의 자연재해위험 (지진위험 추가 검토중)	- 지진위험
상품 형태	- 화재보험의 의무특약으로 운영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부대)	- 화재보험의 의무특약으로 운영	- 가계성화재보험의 자동 부대특약으로 운영 (거부의사 없는 한 부대)
요율	- 국가에서 결정 (화재보험료의 12%)	- 민영보험 Pool에서 결정 (건물 0.045%, 동산 0.03%)	- 손보요율산출기구 결정 (목조 0.120%~0.355%, 비목조 0.05%~0.175%)
보상 한도	- CatNat에 의한 복구의 전제로서 정부의 재해선포 필요 - 보험가액한도로 보상	- 건물 3만 스위스프랑 - 민영보험회사에 의한 임의 추가담보 가능	- 1사고당 4조5천억엔 - 건물 5000만엔 - 가재 1000만엔 - 총보상한도액제 운영
공제 금액	- 주택물건 250유로	- 주택물건 200/400 스위스프랑	없음
재 보험	- CCR을 통한 정부의 무한보증 제공	- 공영보험은 정부보증 - 민영보험은 Pool 운영	- 정부, 지진재보험회사, 보험회사가 위험분산 - 참여기관별 책임한도액을 사전에 확정 - 정부는 특별회계에 의한 재보험기금운영
특징	- 화재보험 의무특약으로 운영함으로써 역선택 위험 감소 - 정부가 CCR을 통하여 무한보증 제공 - 평형준비금제도 운영	- 화재보험 의무특약으로 운영함으로써 역선택 위험 감소 - Pool을 통한 위험분산 - 민영보험 및 공영보험 공존	- 화재보험에 자동부대담보로 역선택위험 감소 - 정부가 JER과 계약관계에 의하여 재보험담보 제공

<별첨 2> 주요국의 농작물재해보험제도 현황

구 분	미국	일본	스페인
근거법률	농작물보험법 Crop Insurance Act	농업재해보상법	복합농업보험법 Ley de Seguros Agrarios Combinados
사업년도	1938년	1949년	1954년
가입방식	임의가입	수도작·잠전(의무) 과수 등기타(임의)	임의가입
원보험주체	민영보험사	공제조합	민영보험사(폴구성)
보험목적물	밀·콩·보리등 (100여종)	농작물,잠전,가축 등 (40여종)	농작물(30여종)
보험료 규모	34억불(2003년기준)	1,444억엔(2002년기준)	3.45억불(2002년기준)
대상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재정지원	위험보험료 55~67% 운영비 100%	위험보험료 50% 운영비 약500여억엔 (연간)정액지급	총보험료의 53%
담보수준	수확량의 50~80%	수확량의 70~80%	수확량의 65%
손해율	108.7%('98~'02)	52.7%('00)	97.2%('02)
재보험방식	비례/비비례혼합방식	비례방식	비비례방식
재보험운영기구	정부(FCIC)	정부(농림수산성)	정부(CCS)
재보험재원조달방식	기금	특별회계	전문재보험기구
가입률	72.7%('00년 기준)	수도작 90.3% 과수등기타25% ('01년 기준)	30%

<별첨 3> 농작물재해보험의 작물 확대계획에 따른 보험료 규모 추정자료

(단위 : 톤(t), 천원)

품목	생산량(t)	t당가격	생산액	가입금액	추정순보험료
기시행품목					32,996,000
수도작	4,415,522	1,967	8,685,331,774	2,692,452,850	107,967,359
토마토	264,121	656	173,333,808	53,733,481	2,154,713
딸기	200,805	1,291	259,138,853	80,333,044	3,221,355
수박	637,498	423	269,342,905	83,496,301	3,348,202
인삼			578,366,000	179,293,460	7,189,668
참외	231,912	902	209,153,702	64,837,648	2,599,990
오이	395,123	688	271,726,087	84,235,087	3,377,827
호박	135,935	645	87,650,888	27,171,775	1,089,588
무	219,869	240	52,768,560	16,358,254	655,966
배추	219,017	431	94,396,327	29,262,861	1,173,441
풋고추	218,164	2,493	543,817,403	168,583,395	6,760,194
메론	31,027	1,630	50,561,599	15,674,096	628,531
고추	132,010	6,185	816,481,850	253,109,374	10,149,686
맥류	168,317	787	132,507,558	41,077,343	1,647,201
난류			104,463,000	32,383,530	1,298,580
장미			163,228,000	50,600,680	2,029,087
마늘	378,846	2,204	834,976,584	258,842,741	10,379,594
양파	745,203	667	496,739,900	153,989,369	6,174,974
감자	498,401	540	268,928,873	83,367,951	3,343,055
느타리			293,334,966	90,933,839	3,646,447
합계			14,386,248,637	4,459,737,078	211,831,457

- 주) 1. 추정순보험료는 품목별 생산액에 가입률(31.0%), 순보험요율(4.01%)를 곱하여 단순추정함
2. 생산액 = 2003년 작물별 생산량 × 2003년 톤당 농가판매가격
3.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기시행중인 6개 과수의 2003년 생산액 대비 2004년 가입금액의 비율인 31.0%를 준용함
4. 순보험요율은 사과 2004년 시군별 요율의 산술평균값인 4.01%를 준용함
5. 인삼, 난류, 장미, 느타리의 생산액은 농림부의 경상가격기준 농림업생산액 통계 이용
6. 농림부의 세부확대계획(안)에도 제시되지 않은 작물 4가지는 제외하고 추정하였음

CEO Report 2004-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 참여전략

발행일	2004년 9월 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이 득 주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쇄소	(주)OOO 대표전화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손해보험본부
화재해상보험팀(☎368-419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